보안정책 지침

사규번호 : 0000

제정번호 : Version 1.0

개정이력

개정 번호	조항 번호	개정내용요약	개정 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1.0	New	신규제정	00.00.00		

제 1	장	총칙		5
	제	1조	(목적)	5
	제	2조	(적용범위)	5
	제	3조	(용어의 정의)	5
	제	4조	(권한과 책임)	7
제 2	장	보안관리	II 체계	9
	제	5조	(연구보안관리지침의 제7	
	제	6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9
	제	7조	(연구보안관리 조직 구성 및 계획 수립)	10
	제	8조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교육 기획 및 시행)	10
	제	9조	(보안관리 지도 감사 계획 및 수행)	11
	제	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도 및 점검)	12
	제	11조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	12
	제	12조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12
제 3	장	참여 연	구원 관리	12
	제	13조	(임직원 등의 보안서약서 징구)	12
	제	14조	(퇴직/전출/전직/휴직 예정자에 대한 보안조치)	12
	제	15조	(외부기관 파견자 및 방문자에 대한 보안조치)	13
	제	16조	(유출혐의자/전력자에 대한 특별 보안관리조치)	15
	제	17조	(임직원 등의 출장 및 귀국보고관련 보안조치)	15
	제	18조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	16
제 4	장	연구개별	날내용 및 결과의 관리	17
	제	19조	(연구과제 산출물의 등급표기)	17
	제	20조	(연구과제 성과물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확보)	17
	제	21조	(연구과제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	17
	제	22조	(연구과제개발 사업 수행결과의 해외 기술이전)	18
	제	23조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실시)	18
제 5	장	연구시실	발관리	19
	제	24조	(연구시설 내부 출입 통제)	19
	제	25조	(연구시설 출입자의 출입권한 관리)	19
제 6	장	국가연구	그개발과제 연구노트 관리	20
	제	26조	(연구노트의 작성의무)	20
	제	27조	(연구노트의 요건)	20
	제	28조	(연구노트 작성 매체)	20
	제	29조	(연구노트 작성방법)	20
	제	30조	(점검자)	21
	제	31조	(연구노트 관리부서)	22
	제	32조	(연구노트의 소유)	22

저	33조	(분실)	22
저	34조	(보관 및 관리)	22
저	35조	(공개)	23
저	36조	(폐기)	23
제 7장	연구과제	데 관련 정보통신망 관리	24
저	37조	(연구과제 시설 네트워크 보호)	24
저	38조	(연구과제 정보시스템 권한관리)	24
부 칙			24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OOO (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자체연구개발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다양한 위험과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 1. 본 지침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연구 개발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외부방문자 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단, 해 외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지역특성 및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예외 또는 추가 조치를 둘 수 있고,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그에 따른다.
- 2. 본 지침은 수행 중인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되며,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내용은 회사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 3. 국가개발사업의 경우, 본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법령 사이에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우선시 한다.
- 4. 본 규정은 회사의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자산 및 연구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하 "정보자산 등"이라고 한다)에 적용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	용어 설명
TL+II 어그게 바고니	외부기관 등의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회사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
자체연구개발과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
국가연구개발사업	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ᄌᅅᅒᅒᄀᆚ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
중앙행정기관 	교통부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
	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줴ᆌᆒ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
주관기관 	다.
*F04.21.2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참여기관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기관의 장	연구기관이 속해 있는 조직의 최종 결재권 자로서 CEO를 말하고

용어	용어 설명
	있으나, 당사는 기술분야 최고 책임자인 연구개발임원에게 과제
	의 연구보안운영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연구보안심의회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수행 및, 연구개발
	과제의 중요도 분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	연구보안심의회의 의결 건에 대한 최종 승인자인 연구개발임원을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위원	연구보안심의회 의결 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안건을 선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간사	효율적인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의 사무 및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자문	연구보안정책 및 보안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감사	연구보안과제의 보안운영 이행점검,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 일원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효
회사정보보안담당자	율적 보안업무 수행과 운영관리의 중요사항을 건의하는 회사 내
	보안 담당자를 말한다.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각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제 일정, 예산 및 과
	제관련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PM 또는 PL)를 말한다.
	연구보안심의회에서 규정한 정책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안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년 1개년 보안관리 담당자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구개발관련 보안 교육
	연구개발관련 관련 시설의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관련 영업비밀의 관리 및 보안사고 대응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보안과제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
	안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되며, 연구보안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

용어	용어 설명
	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Know-how 전략 (Black box 전략)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 대신에 영업비밀(노하우)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특허출원 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공개되어 경쟁업체를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업비밀로서의보안관리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연구노트	내부임직원 등이 연구의 수행시작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자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서면연구노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로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 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전자연구노트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화문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 보 관,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기록자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점검자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 4조 (권한과 책임)

- 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등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하는 즉시 연구개발보안관리담당자/회사정보보안담당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연구개발보안관리담당자/회사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후속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본 지침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 및 책임자 등을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고, 임직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5. 본 지침에 대한 예외의 적용 또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등은 연구개발 보안관리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u>하고 연구개발보안관리담당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 반영/반</u> 영불가/일부반영의 유형으로 사유와 함께 답변을 해야한다. <u>할 수 있다</u>.

제 2장 보안관리 체계

제 5조 (연구보안관리지침의 제·개정·폐지)

- 1. 회사의 연구보안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연구보안관리 지침으로 운영-하며, 이에 대한 제개정 ① 폐지는 연구보안심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내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연구보안심의회는 연구사업특성, 업무여건 및 대내외 보안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사규에 반영하여 임직원 등에게 공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연구보안심의회는 매년 최소 1회 연구보안관리 지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적정성 검토 시 관련 법령의 제②개정②폐지 여부를 포함한 준법성 검토를 같이 수행하여 야 한다.
- 4.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내용에 하기와 같은 사유로 영향을 주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보안원칙이나 보안체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 2. 연구조직의 개편, 변경으로 보안의 역할과 책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3. 회사의 내·외부 보안환경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4. 연구개발과제에 새로운 보안위협 또는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 5. 현행 법령 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5. 회사정보보안담당자는 회사 내 연구개발 업무특성 및 보안요구사항, 현행 법령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안심의회에게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제②개정②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6. 연구보안심의회는 회사정보보안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①개정 ②폐지의 필요성 및 제출된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 ②개정 ②폐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7.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제②개정②폐지의 검토요청 시 하기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요청은 문서화되어 연구보안심의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 1. 요청자 정보(부문, 요청부서, 이름)
 - 2. 요청내역 (제②개정②폐지 여부)
 - 3. 요청사유 및 개선제안

제 6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 1.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 개발과제 보안관리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이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 2.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폐지
 -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사후 조치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4. 연구개발과제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 산하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업무의 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심의회 간사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 4.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별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으로 정한다.
- 5.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보안관리 운영을 위해 자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인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은 연구보안심의회 간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7조 (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 1. 연구개발 보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인원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다.
- 2.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변경 발생 시 회사정보보안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는 필요 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는 연구보안관리 계획의 진행경과 및 실적에 대한 결과를 최소 연 1회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연구보안관리 계획서에는 하기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교육 일정 (임직원 등)
 - 2. 자체보안진단 일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

제 8조 (비밀번호보안정책)

- 1. 비밀번호 최대 사용 기간은 30 일로 설정한다
- 2. 비밀번호 임계값은 5 회로 설정한다.